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이전에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 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상위 법령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의 정보공개 수수료 반영
- 나. 구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는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 3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민원여권과,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예관동), 전화 : 02-3396-4755, FAX :
02-3396-8648, E-mail : shi5252@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민원여권과(☎3396-475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의 전자파일의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33종)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가. 사본(종이출력물) (1)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2)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나.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다.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1)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2)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라.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1)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2)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3.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33종)			3.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33종)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 파일	가. (생략)	가. 사본(종이출력물) (1)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가.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가. 사본(종이출력물) (1)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나. (생략)	(2)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나.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1)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3)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u><신 설></u>			
		다. (생략)			다.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1)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2)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라. (중전의 다목과 같음)